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7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8년 08월 28일
- 회부일자 : 2018년 08월 31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각 장 및 조에 사용된 용어 중 “학자금 이자지원” 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으로 명확히 규정
- 나.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계정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조)
- 다.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시기와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의 다음연도 예산 반영을 명시 (안 제3조)
- 라.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거주
 - 소득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 해당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 14조)
 - “부적절한” ⇒ “부적당한”, “해촉” ⇒ “위촉 해제”

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도 정책기획관” 을
“도 기획관리실장” 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사무관”
에서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함. (안 제12, 16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 충북도의 이자지원사업은 2년(2011~2012년)동안 시행 이후 지원대상자 감소추세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등의 확대로 2013년부터 중단하였으나, 이후 2017년 하반기 도 내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재개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 4월부터 지원을 재개함.
※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중
- 사업재개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제명, 각 장 및 조명, 조문에 사용된 용어 중
“학자금 이자지원” 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으로 변경함.
 - 현재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은 타당함.

○ 안 제2조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계정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과거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신용보증계정을 통해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진행해 왔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학자금대출이 한국장학재단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된 바, 현행 조례의 제2조 제1호에 포함된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학자금대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며, 같은 조 제4,5호에 명시된 “신용보증”,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를 삭제 하는 것은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u>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u>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4. “신용보증”이란 제3호의 도 지역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 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p> <p>5.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 이자 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p> <p>4. (삭 제)</p> <p>5. (삭 제)</p>

- 또한, 제3호에서 “지역대학생”을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용어 정의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3. “지역 대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 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본인 또는 직계존속) 타 지역 고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학자금대출 이차지원계획의 수립 시기 및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원계획에 대한 통보 범위를 고등교육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을 부담하는 시·군까지 확대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음.
 - 충북의 경우 조례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과거(2011~2012) 사업 추진 시,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을 소득 7분위까지로 제한하였었음.
 - 교육부의 한국장학재단이 2015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자격을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시행 중이라는 점과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학자금 이차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소득분위 : 매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을 고시함.

(2017년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소득 인정액	134 이하	312 이하	402 이하	491 이하	580 이하	692 이하	804 이하	982 이하	1,295 이하	1,295 초과
평균 월소득 (자산평가 제외)	99	187	257	314	369	420	483	555	670	987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①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 제3호의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p> <p>②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 도 시행계획 및 성과 (2011~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이자지원 대상 : 7분위 이하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자(재학생) - 지원실적 : 2년 간 6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학기) 123명, (2학기) 468명 · 2012년: (1학기) 34명, (2학기) 9명 	<p>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3. <u>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하는 사람</u>

○ 안 제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는 당위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 현행 장학금 등이 필요한 수업료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인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저소득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제외 한다” 는 당위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학자금 이자지원 중복금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p>	<p>제8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 안 제12조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도 정책기획관” 을 “도 기획관리실장” 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사무관” 에서 “업무 담당 사무관” 으로 변경한 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서 명칭의 변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개정에 문제가 없으며,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2018년 충청북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접수현황

(2018. 7. 31. 기준)

신청지역	사업량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총 계	
		신청인원	접수완료	신청인원	접수완료	신청인원	접수완료
총 계	6,400	117	79	202	126	319	205
청주시	3,175	70	47	104	70	174	117
충주시	855	10	7	27	14	37	21
제천시	955	9	5	32	17	41	22
보은군	65	1	0	3	3	4	3
옥천군	160	7	6	2	1	9	7
영동군	340	3	3	10	6	13	9
증평군	125	5	2	0	0	5	2
진천군	230	8	6	9	4	17	10
괴산군	105	0	0	3	2	3	2
음성군	310	4	3	10	7	14	10
단양군	80	0	0	2	2	2	2